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2 - 1103 호

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(건설업의 등록기준)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8월 19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◎ 처분내역

상호명 (대표자)	소재지	업종	위반내용	행정처분
송림건설(주) 조○현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8, 303호 (광호빌딩, 홍은동)	시설물유지관리업	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(건설업의 등록기준)위반 ※기술인 미달	영업정지 4개월 (2022.08.19. ~2022.12.18.)